

---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디자인 및 디지털 콘텐츠 관리용역 과업지시서

---

2026.01.

화동  
2571

## 1 과업개요

- 용역명 :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디자인 및 디지털 콘텐츠 관리용역
- 용역목적
  -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디지털 아카이브 환경 구축
  -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각종 운영에 수반되는 디자인물의 신속한 제공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진 및 영상 자료관리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SNS 및 홈페이지 관리
- 용역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까지
- 용역금액 : 월 6,000,000원 × 12개월 = 금 72,000,000원(부가세별도)

## 2 과업내용

- 용역개요 :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2026년도 디자인 및 아카이브 관리
- 과업범위
  - 시설물 운영과 관련된 각종 디자인물의 제작 및 촬영
  - 시설물 운영에 수반된 SNS 및 홈페이지 게시용 자료수집 및 보관

## 3 과업수행 세부지침

- 세부내역

구분	내역
콘텐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운영시설 및 각종 이벤트 수반 디자인물 제작 지원</li><li>운영시설 및 각종 이벤트 기록 및 촬영지원</li><li>온라인 (채널 · SNS · 홈페이지 등) 게시물 제작 편집 지원</li><li>홍보 · 마케팅 용역을 위한 자료 제공 지원</li></ul>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온라인 (채널 · SNS ·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 지원</li><li>운영시설 및 각종 이벤트 홍보 · 마케팅 용역 자문</li><li>디자인물 및 각종 촬영기록물 (아카이브)저장관리 지원</li></ul>

## 2. 저작권 및 납품

- 가.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저작권, 특허권, 타인소유의 기타의 권리 등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저작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나.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발된 촬영물·제작물·저작권·기타의 권리와 중간 성과물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에 귀속된다.
-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자료 및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에 있으며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고 납품 완료시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3. 장비 및 자료제공

- 가. 본 과업 수행에 수반되는 기본 사무용품 및 장비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되,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및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수탁기관이 보유한 각종 촬영 및 편집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일부를 사무공간 및 각종 과업 수행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나.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장비는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수탁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및 수탁기관이 보유하지 아니한 특수장비 또는 대규모 장비, 기타 자료(도서구입이나 문서열람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포함)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여 또는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이 부담한다.

## 4 과업 진행방법

### 1. 과업 수행 협의

- 가.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수탁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과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에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하며, 정기·임시적 회의 소집을 통해 과업 수행의 범위와 내용을 협의한다.
- 나. 과업수행의 협의 내용에 따라 연·월·주 별 과업수행계획을 작성·수정한다.

### 2. 과업 수행 수시보고 및 기타보고

-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기간 중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 보고를 한다.
- 나.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를 한다.
- 다. 위험관리보고 : 과업 수행중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후 처리 보고한다.

### 3. 과업 수행 결과보고

- 가. 과업수행자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중간 과업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과업수행보고서를 익월 10일 이전까지 제출한다.
-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과업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과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4. 산출물 및 성과품

- 가. 과업수행자가 수행한 과업 산출물(편집이 가능한 상태의 파일을 포함)과 성과품을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이 제공한 별도의 저장매체(외장하드 및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저장·보관한다.
-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과업 수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과업수행 성과목록표를 제출한다.

## 5 과업수행보고서 및 성과물 납품

1. 본 과업의 보고서 및 성과물을 사전 협의 없이 상기 과업진행방법에서 명시한 일자 까지 이행하지 못할 시 지체된 일수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지체일수 \* 0.0013)이 발생 한다.
2. 본 과업의 보고서에 외부자료를 활용할 경우 원천자료를 목록(항목, 출처, 정보량 등)과 함께 제출한다.
3. 보고서는 과업수행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외부자료를 도용하거나 불법사용을 금하며,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성과물의 미비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5. 제출목록

번호	항목		제출시기
1	착수보고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수시

2	결과보고	1) 과업수행보고서 2)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3) 완료계	1) 익월 10일까지 2) 과업 종료일로부터 10일 3) 상동
3	성과물	- 산출물 및 성과물 저장제출	과업 종료일로부터 10일

## 6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 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수탁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등에 기반한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르며,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수탁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내·외부로부터 지원한 물품에 대한 파손, 손실과 기타 과업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물적·인적 사고를 비롯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은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이 지정하는 담당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 요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 또는 본 용역을 수행할 요소들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나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제반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과업수행이 미달된 경우
  - 다.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 라. 실제 투입인력, 장비 등이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
  - 마. 과업 진행 중 사전 승인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폐기한 경우
  - 바. 과업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하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사. 과업수행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아.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제3자에게 위탁·하도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할 경우
  - 자.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8. 과업 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과업내용에 대하여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이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변경하여야 하며, 보완 및 수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지침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 과업지침에서 정한 완료일 5일 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7

## 대금지급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매월 과업수행 보고서(청구서를 포함)를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하며, 과업수행 보고서 승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수행자에게 과업 수행비용을 지급한다. 단, 과업 용역기간 마지막 월에는 과업수행 결과보고서와 산출물 및 성과품에 대한 승인을 전제로 지급한다.